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4월 24일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4월 15일, 고성미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4년 4월 2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의장 선거 등의 직무대행자 지정 규정 신설(안 제15조제2항)
-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0조)
- 출산휴가를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출산전후휴가로 변경(안 제25조제3항)
-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 규정 정비 및 신설(안 제42조제1항 및 제3항)
- 구정질문 시 구청장 통지 절차 정비(안 제52조제2항)
-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상임위원회 원칙으로 변경(안 제5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) 주요 내용

- 가) 의장 선거 등의 직무대행자 지정 규정 신설(안 제15조제2항)
- 나)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0조)
- 다) 출산휴가를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출산전후휴가로 변경(안 제25조제3항)
- 라)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 규정 정비 및 신설(안 제42조제1항 및 제3항)
- 마) 구정질문 시 구청장 통지 절차 정비(안 제52조제2항)
- 바)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상임위원회 원칙으로 변경(안 제55조)

3) 검토 의견

- 의회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 도모 및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, 법령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